

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21 - 10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자	거창군수
-----	------

1. 요구이유

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기간 만료예정(21. 12. 25.)에 따라 주기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명 :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

나. 주기장 현황

명칭	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				
위치	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394번지 일원 (구, 88고속도로 폐도부지)				
면적	5,863㎡	건축면적	99.75m (30평)	주기면수	약 120대
시설물	관리동 1동 (사무실, 회의실 등)				

※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운영 현황

- 수탁자 : 사)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 거창지회
- 수탁기간 : 2019. 12. 26 ~ 2021. 12. 25.(2년) / 최초 위탁
- 이용현황 : 일 평균 50대
- 위탁료 : 2019년 2,102,070원 2020년 3,565,050원 /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

다. 운영계획

- 운영방법 : 민간위탁(건설기계사업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)
 - 근거 :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제1항,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 - 수탁자 조건 : 거창군 내에 주소를 둔 건설기계사업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
- 민간위탁 배경
 - 수요자 중심의 공영주기장 관리·운영으로 행정능률 향상
 - 건설기계 운행자의 자발적 주기 유도로 주택가·도로변 등 불법주기 개선
- 수탁단체(자) 선정 : 공개모집
 - 근거 :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
- 수탁단체(자) 평가 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평가(정량+정성)

라. 공유재산 관리위탁

-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(공개모집)
 - 근거 :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5제1항제1호,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제5항
-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(부과대상 : 수탁단체)
 - 사용료 :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
 - ※ 가격기준 : (토지)개별공시지가, (관리동) 과세표준가액
 - 근거 :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제1호
- 사용기간 : 3년(1회에 한해 갱신 가능)
 - 근거 :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(5년 이내)

마. 향후계획

- 민간위탁사무 군 의회 동의 : '21. 9.
-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(6~9인) : '21. 11.
- 공영주기장 수탁단체(자) 모집 공고 : '21. 11.
- 공영주기장 수탁단체(자) 선정 및 협약체결 : '21. 12.
- 행정재산 관리위탁, 민간위탁 공보게재 : '21. 12.
- 공영주기장 위탁운영(예정) : '21. 12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(붙임 1)

-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3조의2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, 제19조제4항
-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24조3항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9조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

나. 현장사진(붙임 2)

□ 건설기계관리법

제33조의2(공영주기장의 설치)

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영주기장(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(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설치·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미리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,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계획을 수립·변경하거나 인가·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

1.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□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

제24조(대부료율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.

1. 공용·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

□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

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(개정 2013.6.12.)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
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(개정 및 후단신설 2013.6.12)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.)

제5조 (수탁기관의 선정)

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.(전문개정 2013.6.12)

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.(개정 2013.6.12.)

제6조(민간위탁심의위원회)

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, 수탁기관 선정,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

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.

1. 군 소속 공무원(개정2014.5.28)

2. 대학교수,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(개정2014.5.28)

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,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
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08. 1. 14 개정 2013.6.12.)

제9조(협약체결 등)

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.

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(전문개정 2013.6.12)

□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4조(협약의 체결 등)

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체결,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, 위탁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□ 건설기계공영주차장

